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8 선고 2019가단55652 판결 [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4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7,848,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4. 30.부터 2009. 9. 26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2019. 12. 6.까지는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1. 25. 선고 2009가단154722 판결금의 소멸시효 완성 저지를 위한 청구)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차영민

별지